

# 정관

포스포올

FOSS for All

# 정관

2025년 03월 08일 제정

## 제1장 총칙

### 제1조 (명칭)

이 단체의 명칭은 “포스포올”라 하고, 영문으로는 “FOSS for All”이라 한다.

### 제2조 (목적)

이 단체는 다양한 자유/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와 커뮤니티를 연결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고,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 등을 제공하며, 그 외 자유/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자유/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3조 (사업)

①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자유/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와 커뮤니티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행정적 지원을 위한 사업
2. 여러 자유/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와 커뮤니티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
3. 자유/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저변확대와 발전 및 혁신을 위한 행사 개최 등의 다양한 활동
4. 기타 이 단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

② 단체는 제2조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3조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,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유료 교육 및 훈련 사업
2. 각종 기념품 등 판매 사업
3. 대형 행사 및 프로젝트 등 진행 시 경비 충당을 위한 협찬 및 후원사 모집 사업
4. 기타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운영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

### 제4조 (사무소의 소재지)

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,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
## 제2장 회원 및 임원

### 제5조 (회원의 자격)

이 단체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,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

## 제6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-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- ② 회원은 본회의 정관, 규약, 규정 및 각급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한다.
- ③ 회원은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## 제7조 (회원의 탈퇴와 징계 및 제명)

-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-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.
  1.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  2.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

## 제8조 (임원의 구성)

이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대표 1인
2. 대표를 포함한 운영위원 3인 이상 15인 이하
3. 감사는 총회의 결의로 둘 수 있다.

## 제9조 (임원의 선임)

- ① 단체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, 대표는 총회에서 임원 중에 선출한다.
- ② 단체의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.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며, 본 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또한,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.
 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6.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
## 제10조 (임원의 해임)

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

1. 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간의 분쟁 ·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
### 3. 이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#### 제11조 (임원의 임기)

-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.
-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
#### 제12조 (임원의 직무)

- ① 대표는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- ② 대표가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는 경우 미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운영위원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. 정해진 직무 대행 순서가 없는 경우, 운영위원 중 한 명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정해야 한다.
- 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④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, 운영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## 제3장 운영위원회 및 총회

#### 제13조 (운영위원회의 구성)

- ① 대표와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#### 제14조 (운영위원회의 소집)

-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 및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소집한다.
- ② 정기운영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운영위원회는 대표, 감사 또는 재적 운영위원 1/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
#### 제15조 (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)

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# 제16조 (총회)

-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대표가 소집한다.
-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대표 또는 감사 및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- ③ 대표는 총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정하여 회의일 7일전까지 회원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## 제17조 (총회의 의결정족수)

- ①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 제18조 (총회의 의결사항)

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1. 임원의 선출과 해임
2.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3. 기본재산의 취득,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5. 사업계획의 승인
6. 기타 중요사항

## 제19조 (회의록)

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, 출석한 운영위원 또는 출석한 회원 중 임시로 선출한 1명 이상의 서명위원과 의장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다.

# 제4장 사무국

## 제20조 (종사자의 구성 및 임명)

- ① 이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운영위원회 결의로 정한다.
- ②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.

# 제5장 회계 및 재정

## 제21조 (재산의 구분)

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1. 기본재산은 이 단체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.
2.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## 제22조 (수입금)

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, 기부금, 정부보조금,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.

## 제23조 (출자 및 응자)

이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 단체의 출자나 응자를 받을 수 있다.

## 제24조 (잉여금의 처분)

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그 일부 혹은 전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다.

## 제25조 (회계연도 및 보고)

-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-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.

## 제26조 (보수의 지급)

원칙적으로 임원 및 회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활동 및 사업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 제27조 (이익 배분 금지)

이 단체는 구성원에게 이익을 배분하지 아니한다.

# 제6장 보칙

## 제28조 (정관변경)

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29조 (해산 및 합병)

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30조 (잔여재산의 귀속)

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단체의 취지에 가장 가까운 비영리 단체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.

## 제31조 (서면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결의)

총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각급 회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결의할 수 있다.

## 제32조 (부속 규약 및 규정)

본 정관 규정 이외에 본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 의결로 별도 규약을 두어 정하거나, 운영위원회 의결로 별도 규정을 두어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위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정관을 작성하고  
이에 발기인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다.

2025년 02월 25일

발기인 대표 **한영빈** (서명 또는 인)

발기인 **조성수** (서명 또는 인)

발기인 **문성준** (서명 또는 인)